

**투자위험등급 :**  
**1등급**  
**[ 매우높은위험 ]**

와이즈에셋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와이즈 HR-홀런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와이즈 HR-홀런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와이즈 HR-홀런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와이즈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iseasset.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1년 05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1년 06월 27일  
※ 본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으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 1조원]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사 영업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일반투자자들에게서는 투자판단시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목 차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기간
  - 나. 모집장소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 가. 책임운용전문인력의 개요
  -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 나. 투자제한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나.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가. 일반위험
  - 나. 특수위험
  - 다. 기타 투자위험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나. 환매
- 다. 전환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 나. 과세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 가. 요약재무정보
  - 나. 대차대조표
  - 다. 손익계산서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개요
  - 나. 주요업무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 운용자산 규모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가. 주요업무
  - 나.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가. 주요업무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
-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가. 주요업무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총회 등
  - 나. 잔여재산분배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라. 손해배상책임
  - 마. 재판관할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해지
  - 나. 임의해지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나. 수시공시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와이즈 HR-홍련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89352)							
종류(클래스)	종류A	종류 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w	종류 C-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89960	89770	96374	96375	96376	96377	44566	94029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집합투자기구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이 납입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 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별도의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이루어지며 판매회사의 명단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또는 집합투자업자(www.wiseasset.c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와이즈 HR-홀런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89352)							
종류(클래스)	종류A	종류 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w	종류 C-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89960	89770	96374	96375	96376	96377	44566	94029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4. 05. 18	- 최초설정
2008. 10. 20	-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의 발행에 따른 약관변경
2009. 01. 05	- “종류 A” 해지
2009. 05. 03	-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현대 HR30 주식투자신탁1호 → 현대 HR30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009. 08. 04	- 사명변경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명칭 및 집합투자업자명칭 변경 <b>■ 집합투자기구명칭</b> : 현대 HR30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와이즈 HR30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b>■ 집합투자업자명칭</b> : 현대와이즈자산운용(주) → 와이즈에셋자산운용(주)
2009. 03. 19	- 집합투자기구명칭 변경 : 와이즈 HR30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와이즈 HR-홀런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010. 10. 18	- 판매보수 인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1. 06. 27	- 운용전문인력 변경(장재원 → 유구녕)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와이즈에셋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2 해성빌딩 10층 (☎ 02-3453-5011)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의 개요

이름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수	규모(수탁고)	
유구녕	1971년	부장	26개	30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세대 대학원 경영학과</li> <li>99.12 ~ 02.07 서울증권 투자분석팀</li> <li>02.07 ~ 09.10 튜브투자자문 리서치팀</li> <li>09.12 ~ 현재 와이즈에셋 주식운용팀</li> </ul>

주) 위 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동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주) 위 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 기간
고승재	2006.08.18 ~ 2009.05.13
장재원	2009.05.14 ~ 2011.06.26
유구녕	2011.06.27 ~ 현재

주)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집합투자기구,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주요 투자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내용
①주식	국내에서 발행되고 국내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에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 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을 말함
②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을 말함
③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말함
④어음 등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신용등급 A3-이상인 것)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말함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내용
⑤주식및채권 관련 장내 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총자산의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을 말함
⑥금리스왑 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함
⑦집합투자 증권 등	5%이하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단,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⑧증권의 대여	투자증권 총액의 50%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을 대여
⑨환매조건부 채권매도	채권총액의 50%이하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투자신탁이 보유한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 공여)</li> <li>-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li> <li>-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업자는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li> </ul>		

※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㉔ 및 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㉑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㉒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 ㉓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 ㉔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㉕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li> <li>-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 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li> </ul>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단,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구분	내용	적용 제외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한다) 및 제79조제2항제5호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증권,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계약에서 후순위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법인 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0%(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를 초과하는 행위</li> <li>-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li> <li>-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초과하는 행위</li> </ul>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후순위채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매매하는 행위</li> <li>- 집합투자기구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li> </ul>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 주식 부문

- 시장환경에 적극적 대응하며 중장기적 우량주, 저평가 및 성장성 높은 개별종목에 투자
- 편입비율 조정을 통하여 지수대비 초과수익 달성

■ 채권 부문

(1) 포트폴리오의 기본구조

- 국공채, 통안채에 대한 비중을 채권자산의 40% 이하로 운용하여 안정적인 수익확보
- 신용등급 BBB-급이상의 회사채에 40%이하로 투자
- BIS 비율 10%이상인 우량은행이 발행한 은행채 20%이하로 투자

(2) 포트폴리오의 구성기준

- 무위험 자산 vs 위험 자산 스프레드(Spread) 변동에 따른 회사채 등 비중 조정
- 신용등급 상향 예상 종목 발굴 투자
- 장단기간, 현·선물간, Inter-Sector 간, Intra-Sector 간 스프레드(Spread) 활용

(3) 시장 적응적 투자

- 금리변동 위험에 대해서 신축적 채권만기(Duration)조절과 금리파생상품 활용 신용등급변동 위험에 대해서 A등급 이상 투자 및 동일종목 투자 최소화

※ 비교지수 :  $([주식\ 약관비]*0.9 * [KOSPI]) + ((1-[주식\ 약관비])*0.9 * [매경BP국공채1년]) + (0.1 * MMI종합지수^{주2})$

주1) 상기 비교지수는 주식 및 채권의 투자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주식투자비율이 높을수록 KOSPI 변동폭을 주로 추종하며, 낮을수록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지수를 추종합니다.

주2) 단기자금시장지수(MMI지수 : Money Market Index) : 단기금융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구성된 CP, CD, Call을 포함하는 총 수익지수로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단기유동자산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주3) 상기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위험관리

펀드설정 초기 설정금액, 시장여건, 운용상의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중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분기 및 월별 모델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자산배분 조정) 계획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분기 리밸런싱(자산배분 조정)을 기본 전제로 하되, 투자환경 및 대상 투자대상자산 운용상 큰 변화 발생시 월간 및 수시 리밸런싱(자산배분 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국내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므로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 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의 '11. 매입·환매·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의 '(7)수익증권이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매청구시 위험	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규모변동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 합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과세위험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투자신탁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예상하지 못한 가치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주요투자대상 및 원본손실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신탁재산의 60%이상을 변동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므로 투자등급 5등급중 1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분류기준	개요 및 예시
1등급	매우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자산<sup>주1)</sup>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원금비보장형으로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자산에의 최대편입비가 30%초과 60%미만인 집합투자기구</li> <li>■ 주식시장전체를 추적대상으로 하는 인덱스운용전략 집합투자기구</li> <li>■ 최대손실가능비율<sup>주1)</sup>이 투자원금대비 -20%초과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자산에의 최대편입비가 30%이하인 집합투자기구</li> <li>■ 주식시장전체를 추적대상으로 하는 인덱스운용전략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주식등의 최대편입비가 60%이하인 집합투자기구</li> <li>■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20%이하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원금부분보장형)</li> <li>■ A-급 이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량등급(A-이상)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하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원금보존추구형)</li> <li>■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5등급	매우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li> <li>■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듀레이션 3년미만)</li> <li>■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주1) - 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이하)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 최대손실가능비율 :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 가능한 손실가능비율. 다만 신용위험 및 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실제손실이 최대손실가능비율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주2)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해지 여부 및 투자국가 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자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등급을 판단합니다.
  -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 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주3) - 상세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동 기준에 준하여 별도로 분류합니다.
- 본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와이즈에셋자산운용(주)의 자체기준으로 투자자의 위험성 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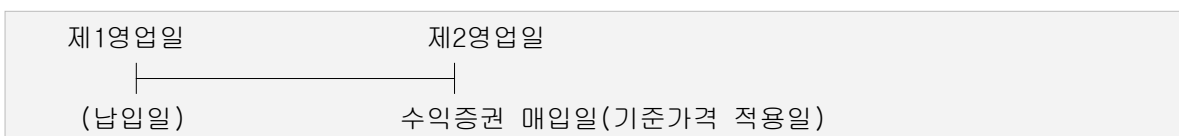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별	펀드코드	가입자격
종류 A	89960	가입제한 없음
종류 C1	89770	가입제한 없음
종류 C2	96374	종류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종류 C3	96375	종류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종류 C4	96376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종류 C5	96377	종류 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종류 Cw	44566	랩어카운트 가입고객
종류 C-e	94029	온라인 가입고객

####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5 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표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15 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당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가 15시[오후3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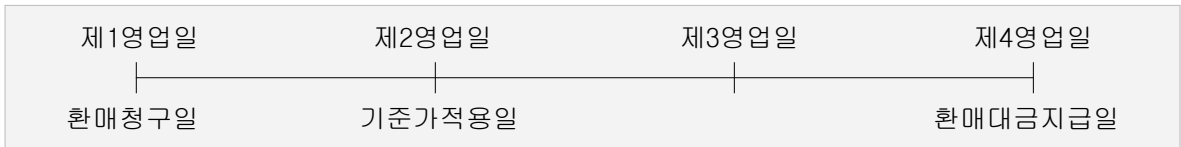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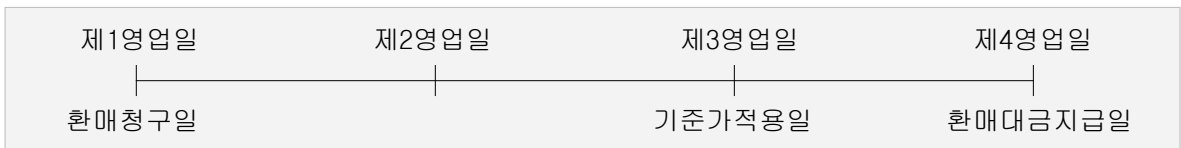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5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2 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오후 15 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 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분	지급비율	비고(지급시기)
종류 A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w	해당 없음	-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환매청구가 15시[오후3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 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상기 위에서 정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합니다.

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 전환 :

- 1)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뜻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가) 종류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나) 종류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다) 종류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마) 종류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5 수익증권으로 전환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합니다.
- 5)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 청구하는 경우
  - 나)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 청구하는 경우.(단, 전환한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 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회사(www.wisepasset.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

※ 공휴일 및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코스피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인 경우)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평가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구분	내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에서 발표하는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주)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 상기 이외의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합니다.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① 종류A 수익증권 :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구분	수수료율 및 부과기준	지급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매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② 종류C1 수익증권 :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구분	수수료율 및 부과기준	지급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	
후취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③ 종류C2 수익증권 : 종류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구분	수수료율 및 부과기준	지급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	
후취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④ 종류C3 수익증권 : 종류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구분	수수료율 및 부과기준	지급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	
후취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⑤ 종류C4 수익증권 :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구분	수수료율 및 부과기준	지급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	
후취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⑥ 종류C5 수익증권 : 종류 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구분	수수료율 및 부과기준	지급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	
후취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⑦ 종류Cw 수익증권 : 랩어카운트가입고객

구분	수수료율 및 부과기준	지급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	
후취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⑧ 종류C-e 수익증권 : 온라인가입고객

구분	수수료율 및 부과기준	지급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	
후취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나. 집합투자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① 종류A 수익증권 :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구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250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5000	
신탁업자보수	0.05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기타비용	0.000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8250	
증권 거래비용	0.0000	사유 발생시

② 종류C1 수익증권 :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구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250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4000	
신탁업자보수	0.05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기타비용	0.0031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7281	
증권 거래비용	0.5776	사유 발생시

③ 종류C2 수익증권 : 종류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구 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250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3000	
신탁업자보수	0.05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기타비용	0.0031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6281	
증권 거래비용	0.5776	사유 발생시

④ 종류C3 수익증권 : 종류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구 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250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2000	
신탁업자보수	0.05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기타비용	0.0031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5281	
증권 거래비용	0.5776	사유 발생시

⑤ 종류C4 수익증권 :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구 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250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1000	
신탁업자보수	0.05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기타비용	0.0031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4281	
증권 거래비용	0.5776	사유 발생시

⑥ 종류C5 수익증권 : 종류 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구 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250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0000	
신탁업자보수	0.05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기타비용	0.0031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3281	
증권 거래비용	0.5776	사유 발생시

⑦ 종류Cw 수익증권 : 랩어카운트가입고객

구 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250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000	
신탁업자보수	0.05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기타비용	0.0055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3305	
증권 거래비용	0.6151	사유 발생시

⑧ 종류C-e 수익증권 : 온라인가입고객

구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250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9000	
신탁업자보수	0.05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기타비용	0.000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2250	
증권 거래비용	0.6869	사유 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연도:2010.05.18~2011.05.17]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연도:2010.05.18~2011.05.17]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천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85	264	459	1,023
종류 C1	177	549	945	2,052
종류 C-e	124	385	667	1,470
종류 Cw	34	106	185	418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를 산출한 것임.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 보수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는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2) 종류 C1을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시 종류 C2 → 종류 C3 → 종류 C4 → 종류 C5로 자동전환되므로 이상의 예시에서는 전환을 가정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의 경우에는 최초 가입이 불가능한 전환형 종류형 수익증권으로 투자자는 종류 C1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하며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집합투자규약 제33조에 의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1 이면 1, 환급비율<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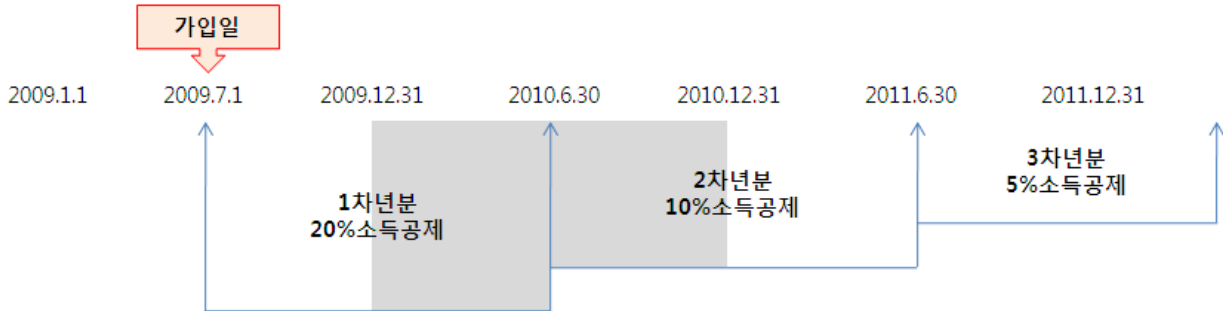
**<장기적립식 투자자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 - 2009.12.31 까지의 가입자**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 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본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비고
제7기( 2010.05.18 - 2011.05.17 )		적 정	
제6기( 2009.05.18 - 2010.05.17 )		적 정	
제5기( 2008.05.18 - 2009.05.17 )		적 정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7 기 ( 2011.05.17 )	제 6 기 ( 2010.05.17 )	제 5 기 ( 2009.05.17 )
운용자산	4,832,814,719	75,247,631,553	102,069,743,090
증권	4,828,707,200	75,115,808,200	97,678,083,50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107,519	131,823,353	4,391,659,59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95,588,339	1,838,956,624	2,430,777,017
자산총계	5,128,403,058	77,086,588,177	104,500,520,107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66,015,369	2,431,335,320	2,406,453,636
부채총계	166,015,369	2,431,335,320	2,406,453,636
원본	4,281,030,705	81,043,527,410	140,242,571,895
수익조정금	-9,951,309,985	-8,777,471,856	-35,342,783,157
이익잉여금	10,632,666,969	2,389,197,303	-2,805,722,267
자본총계	4,962,387,689	74,655,252,857	102,094,066,471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7기 2010.05.18~2011.05.17	제6기 2009.05.18~2010.05.17	제 5 기 2008.05.18~2009.05.17
운용수익	11,086,479,725	24,653,198,965	-5,508,743,770
이자수익	46,182,098	95,794,611	27,539,868
배당수익	291,479,230	1,168,736,150	1,202,447,508
매매/평가수익(손)	10,748,818,397	23,388,668,204	-6,733,731,146
기타수익	111,161	19,223	12,280
운용비용	137,172,783	281,675,971	284,788,047
관련회사 보수	137,172,783	281,675,971	284,788,047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316,751,134	28,521,145	30,107,322
당기순이익	10,632,666,969	24,343,021,772	-5,823,626,859
매매회전율	390.55	289.62	343.09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과목	제7기(2011.05.17)		제6기(2010.05.17)		제5기(2009.05.17)	
	금	액	금	액	금	액
<b>자 산</b>						
<b>운 용 자 산</b>						
<b>현금및예치금</b>		4,107,519		131,823,353		4,391,659,590
1. 현금및현금성자산	4,107,519		73,225,353		44,659,590	
2. 예치금						
3. 증거금			58,598,000		4,347,000,000	
<b>대출채권</b>		400,000,000		2,700,000,000		2,000,000,000
1. 물론	400,000,000		2,700,000,000		2,000,000,00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b>유가증권</b>		4,428,707,200		72,415,808,200		95,678,083,500
1. 지분증권	4,428,707,200		72,415,808,200		95,678,083,500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0		0		0	
4. 기타유가증권						
<b>파생상품</b>		0		0		0
1. 파생상품		0		0		0
<b>부동산과 실물자산</b>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b>기타운용자산</b>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b>기 타 자 산</b>		295,588,339		1,838,956,624		2,430,777,017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73,011,071		1,629,864,225		2,026,450,154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93,894		225,740		1,998,752	
4. 미수배당금	10,232,850		67,901,350		90,543,800	
5. 기타미수입금	12,250,524		140,965,309		311,784,311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5,128,403,058		77,086,588,177		104,500,520,107
<b>부 채</b>						
<b>운 용 부 채</b>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b>기 타 부 채</b>		166,015,369		2,431,335,320		2,406,453,636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135,185,429		2,088,480,311		1,709,295,118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24,491,606		281,826,159		623,363,981	
4. 수수료미지급금	6,338,334		61,028,850		73,794,537	
5. 기타미지급금	0		0		0	
6. 기타부채						
<b>부 채 총 계</b>		166,015,369		2,431,335,320		2,406,453,636
<b>자 본</b>						
1. 원 본	4,281,030,705		81,043,527,410		140,242,571,895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미월잉여금	681,356,984		-6,388,274,553		-38,148,505,424	
(발행좌수 당기: 4,281,030,705 좌 전기: 81,043,527,410 좌 전전기: 140,242,571,895 좌)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기: 924.17 원 전전기: 729.06 원)						
<b>자 본 총 계</b>		4,962,387,689		74,655,252,857		102,094,066,471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5,128,403,058		77,086,588,177		104,500,520,107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7기(2010.05.18-2011.05.17)		제6기(2008.12.22-2010.05.17)		제5기(2008.05.18-2009.05.17)	
	금	액	금	액	금	액
<b>운 용 수 익</b>						
<b>1. 투자수익</b>		337,772,489		1,264,550,684		1,383,945,344
1. 이 자 수 익	46,182,098		95,794,611		97,288,056	
2. 배당금수익	291,479,230		1,168,736,150		1,286,645,008	
3. 수수료수익	111,161		19,923		12,280	
4. 임대료수익						
<b>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b>		14,886,586,476		32,927,260,118		15,653,238,175
1. 지분증권매매차익	14,886,571,587		32,927,174,238		15,652,576,726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613,587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14,889		85,880		47,862	
7. 기타거래차익						
<b>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b>		4,137,768,079		9,538,591,914		51,549,745,911
1. 지분증권매매차손	4,137,221,119		9,537,388,086		51,549,071,951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261,420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546,960		1,203,828		412,540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0		0		0	
8. 기타거래손실						
<b>운 용 비 용</b>		453,923,917		22,264,021,584		314,895,369
1. 운용수수료	107,295,765		233,965,114		237,283,873	
2. 판매수수료	8,418,277		918,114		47,592	
3. 수탁수수료	21,458,741		46,792,743		47,456,582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316,751,134		21,982,345,613		30,107,322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10,632,666,969		2,389,197,304		-34,827,457,761
<b>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b>		2.483669869		0.029480421		-0.248337272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와이즈 HR-흥련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모)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0.05.18 - 2011.05.17	808	747	61	61	827	869	43	50
2009.05.18 - 2010.05.17	1,401	1,022	169	142	762	663	808	747
2008.05.18 - 2009.05.17	0	0	1,570	1,496	169	109	1,401	1,022

① 종류A 수익증권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0.05.18 - 2011.05.17	0	0	0	0	0	0	0	0
2009.05.18 - 2010.05.17	0	0	0	0	0	0	0	0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8.05.18 - 2009.05.17	0	0	0	0	0	0	0	0

② 종류C1 수익증권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0.05.18 - 2011.05.17	4	4	6	6	6	7	3	4
2009.05.18 - 2010.05.17	0	0	3	4	0	0	4	4
2008.05.18 - 2009.05.17	0	0	0	0	0	0	0	0

③ 종류C2 수익증권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0.05.18 - 2011.05.17	0	0	1	2	1	1	0	1

④ 종류C3 수익증권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0.05.18 - 2011.05.17	0	0	1	1	0	0	1	1

⑤ 종류Cw 수익증권 : 랩어카운트 가입고객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9.05.18 - 2010.05.17	807	742	53	52	822	858	38	44
2009.05.18 - 2010.05.17	1,402	1,021	165	138	760	660	807	742
2008.05.18 - 2009.05.17	1,068	1,068	715	626	380	274	1,402	1,021

⑥ 종류C-e 수익증권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0.05.18 - 2011.05.17	0	0	0	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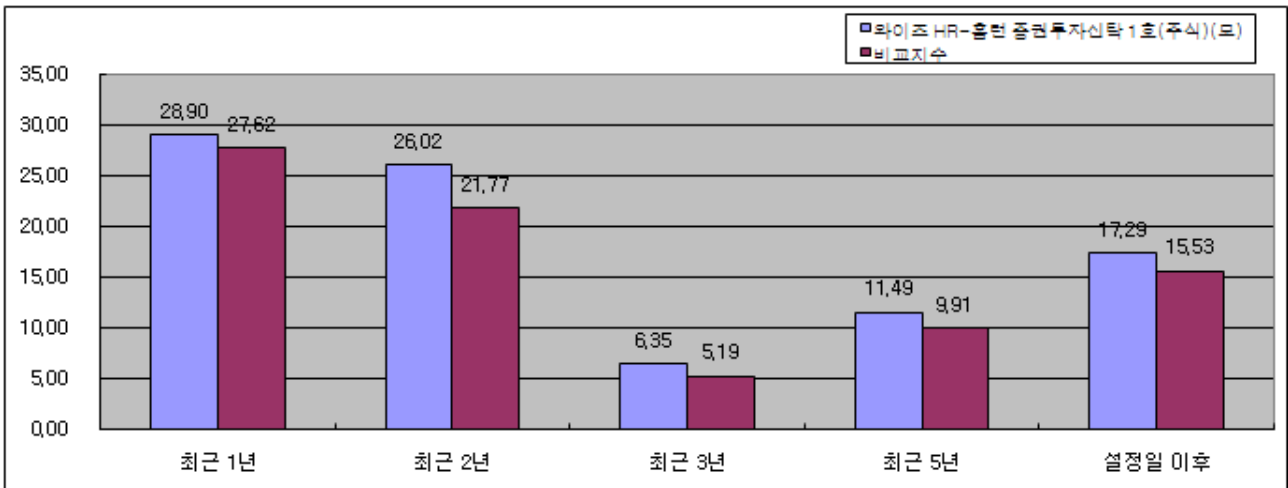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0.06.01 ~11.05.31	09.06.01 ~11.05.31	08.06.01 ~11.05.31	06.06.01 ~11.05.31	04.05.18 ~11.05.31
와이즈 HR-흡권 증권투자신탁1호(주식)(모)	28.90	26.02	6.35	11.49	17.29
비교지수	27.62	21.77	5.19	9.91	15.53
종류 Cw	28.48	25.61	6.06	11.31	17.15
비교지수	27.62	21.77	5.19	9.91	15.53
종류 A	30.00	0.00			11.35
비교지수	27.62	0.00			9.63
종류 C1	26.74	23.91			31.23
비교지수	3.40	3.65			4.45
종류 C-e					25.37
비교지수					2.56
종류 C2					12.05
비교지수					-8.70
종류 C3					8.25
비교지수					0.00

주1) 비교지수 : ([주식 약관비]\*0.9 \* [KOSPI]) + ((1-[주식 약관비])\*0.9 \* [매경BP국공채 1년]) + (0.1 \* [MMI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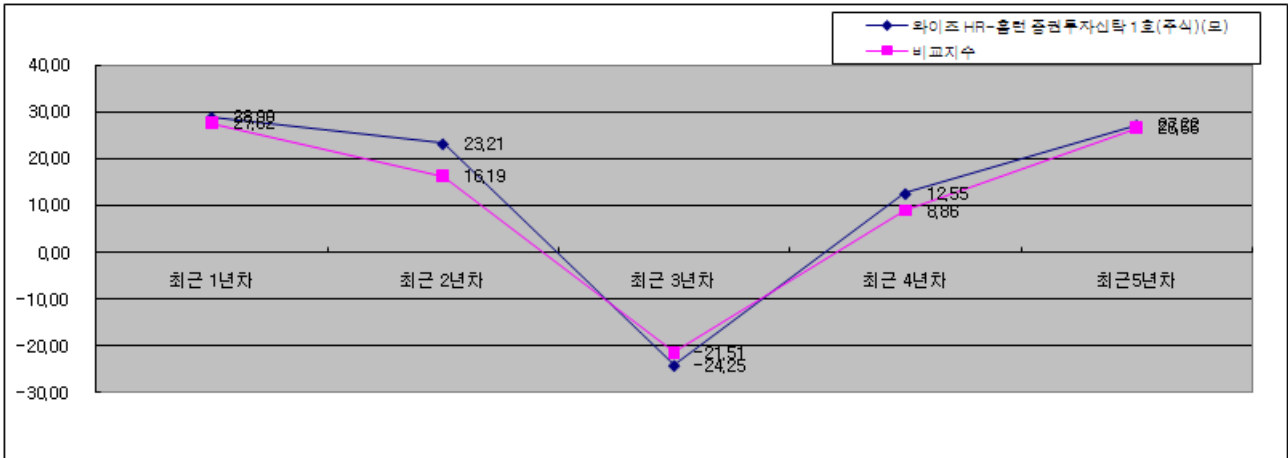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4년	최근 5년차
	10.06.01 ~11.05.31	09.06.01 ~10.05.31	08.06.01 ~09.05.31	07.06.01 ~08.05.31	06.06.01 ~07.05.31
와이즈 HR-흥런 증권투자신탁1호(주식)(모)	28.90	23.21	-24.25	12.55	27.22
비교지수	27.62	16.19	-21.51	8.86	26.56
종류 Cw	28.48	22.81	-24.38	12.55	27.22
비교지수	27.62	16.19	-21.51	8.86	26.56
종류 A	30.00	0.00			
비교지수	27.62	0.00			
종류 C1	26.74	21.14			
비교지수	3.40	3.90			
종류 C-e	25.37				
비교지수	2.56				
종류 C2	95.84				
비교지수	0.00				

주1) 비교지수 : ([주식 약관비]\*0.9 \* [KOSPI]) + ((1-[주식 약관비])\*0.9 \* [매경BP국공채 1년]) + (0.1 \* [MMI종합지수])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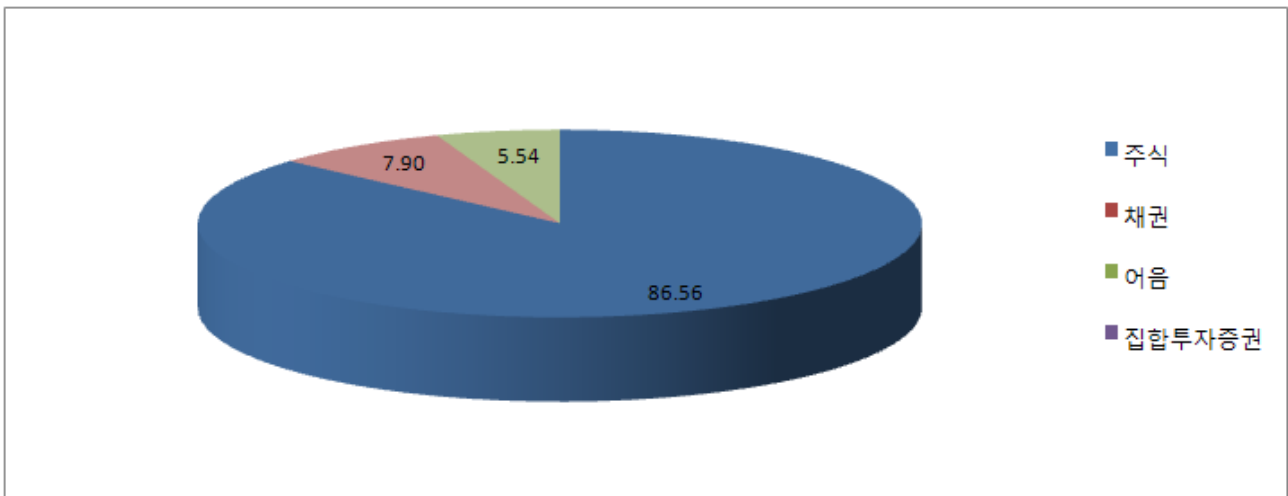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2011.05.17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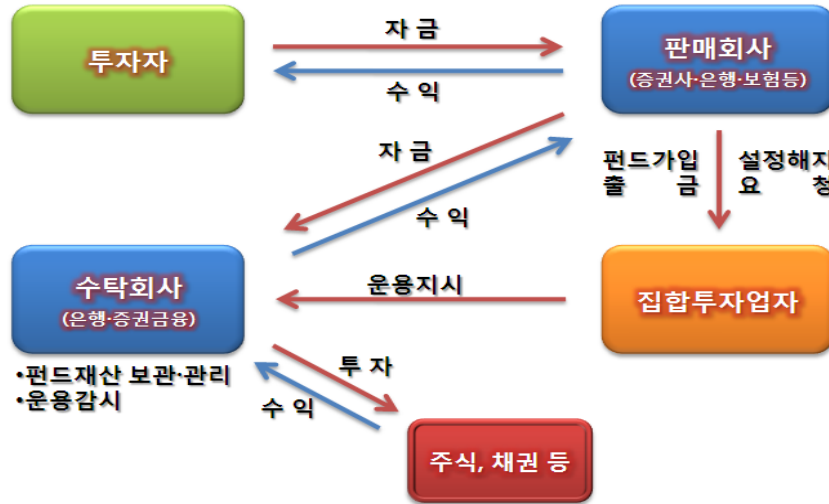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원	44	0.0	0.0	0.0	0.0	0.0	0.0	0.0	0.0	4	3	51
(KRW)	(86.56)	(0)	(0)	(0)	(0)	(0)	(0)	(0)	(0)	(7.90)	(5.54)	(100)
합계	44	0.0	0.0	0.0	0.0	0.0	0.0	0.0	0.0	4	3	51
	(86.56)	(0)	(0)	(0)	(0)	(0)	(0)	(0)	(0)	(7.90)	(5.54)	(1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 펀드의 운용구조 ]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개요

회사명	와이즈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2 (☎ 02-3453-5011)
회사연혁	2000. 7. 7 법인 설립 2003. 5. 7 한국투자증권 명품펀드 선정 2004. 2. 27 국민연금 순수주식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5. 1. 29 경매 부동산펀드 출시 2005. 5. 12 국민연금 PEF펀드 위탁자문사 선정 2006 테마형 주식형펀드 5개 수익률 조기달성 국민연금 운용사평가 "A" 등급 획득 2007~2008 국민연금 운용사평가 "S" 등급 획득 2009. 7. 1 사명변경(현대와이즈자산운용(주)→와이즈에셋자산운용(주))
자본금	100억원
주요주주	이광재 43%, 송준용 24%, 현대증권 33%

#### 나. 주요업무

#####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항목	09.03.31	10.03.31	항 목	09.03.31	10.03.31
현금 및 예치금	1,913	6,337	영업수익	5,289	4,558
유가증권	6,522	5,702	영업비용	3,842	3,519
대출채권	417	367			
유형자산	60	40			
기타자산	2,933	4,539			
<b>자산총계</b>	<b>11,904</b>	<b>16,986</b>	<b>영업이익</b>	<b>1,447</b>	<b>1,039</b>
예수부채	18	-	영업외수익	0	2,010
기타부채	80	3,462	영업외비용	0	2,809
<b>부채총계</b>	<b>98</b>	<b>3,462</b>	<b>경상이익</b>	<b>1,447</b>	<b>241</b>
자본금	10,000	10,00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3,568	3,769	특별손실	-	-
자본조정	△1,762	△245	법인세	378	40
<b>자본총계</b>	<b>11,806</b>	<b>13,523</b>	<b>당기순이익</b>	<b>1,069</b>	<b>201</b>

라. 운용자산 규모

(2011.5.31 현재/단위:억원)

집합 투자 기구 종류	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MMF	총계
	주 식 형	채 권 형	혼 합 형	재 간 접 형	파 생 형	기 타					
수탁고	143	0	440	0	561	0	238	1,338	0	439	3,159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회사명	한국씨티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 번지 (☎ 1588 - 7000)
인터넷홈페이지주소	www.citibank.co.kr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가. 주요업무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나.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신탁업자의 의무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정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가) 투자설명서가 법령, 정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다)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라)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마)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신탁업자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2) 신탁업자의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 (02) 2168-0400 )
홈페이지주소	www.shinhanaitas.com
회사연혁	2000.06 설립 2002.04 AITAS-AMS 자산운용지원시스템 개발 완료 및 서비스개시 2004.10 채권 트레이딩 시스템(ETS)개발 및 서비스 개시 2005.12 신탁/퇴직연금 관리시스템 개발 2007.08 운용전략시스템(BIGS)개발 2008.05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가.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나이스채권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02-399-335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02-3770-04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4층 (02-398-3900)
홈페이지 주소	www.koreabp.com	www.bond.co.kr	www.npricing.co.kr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참조

가. 주요 업무

- 1)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준칙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제공 합니다.
  - 가)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
  - 나)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 다)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 2)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증권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투자신탁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총회 등

##### 1) 투자자총회의 구성

가)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나)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가)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나)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 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 연기수익자총회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으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4) 반대매수청구권

제18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투자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2)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 함으로써 증권에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에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에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에의 소유자

#### 마. 재판관할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3) 투자신탁의 피 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주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가)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 나)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 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 ㉡ 회계기간의 말일
    - ㉢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 ㉣ 해지일 또는 해산일
  - ②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③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⑤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⑥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⑦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⑧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⑨ 투자신탁의 결사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⑩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⑪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⑫ 투자신탁이 환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⑬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사항
-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

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나)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다)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나)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다)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라)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마)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바)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사)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아)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wiseasset.co.kr](http://www.wiseasset.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 합니다.

- 가)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다)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라)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마)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바)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아)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자)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차)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나)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계			
현대증권	주요주주	위탁거래	주식	92,398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단위:백만원)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사유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p>투자증권거래 및 장내파생상품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개회사 선정 목적 및 필요성</b>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투자중개업자의 역량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여 거래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운용의 투명성 및 펀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li> <li>■ <b>평가 항목</b>        중개거래시장점유율, 거래관련자격보유,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합니다.</li> <li>■ <b>선정방법</b>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합니다.</li> </ul>
------------------------------	--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용 어	내 용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하나의 펀드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 및 후취 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의 최저투자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 됩니다.

용 어	내 용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 옵션과 유사합니다.
잔존기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자산 등의 발행조건 태는 거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 등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특별한 조건 없이 상환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가중평균잔존만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개별자산등의 잔존기간에 개별 자산 등의 운용금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전체 운용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처분옵션	자산을 보유한 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당해 자산의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당해 자산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장부가액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가격으로 30일 이내에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기간마다 30일 이내에 사전통지한 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당해자산의 발행조건 또는 거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금리조정부자산	표면금리가 미리 정해진 일자에 특정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자산(이하 “변동금리부자산” 이라 한다) 및 표면금리가 매일의 특정 기준금리의 변동에 연동되는 자산(이하 “금리연동부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용사건	발행인의 부도·채무불이행·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해 자산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을 말한다.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와이즈 HR-흥런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결취선~~ (판매직원 성명:                      서명) ~~—~~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결취선~~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 명칭 : 와이즈 HR-흥런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